


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

2023년	2024년	비고 (페이지)
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</p> <p>①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</p> <p>바.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(시행규칙 제21조, 제21조의 2 참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->필수사항 <참고 추가> <p>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</p> <p>※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</p>	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</p> <p>①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</p> <p>바.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(시행규칙 제21조, 제21조의 2 참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->필수사항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f0f0f0; border-radius: 5px;">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」</p> <p>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. 위탁계약기간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※ 시설 위수탁시 종사자 고용승계가 원칙임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※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(단,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)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☞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.</p>	p.13

	<p>① 수탁자선정심의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(수탁자선정심의회 위원임을 확인)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</p>	
<p>●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●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</p> <p>※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(사회복지법인 포함)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</p>	<p>●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●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</p> <p>※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(사회복지법인 포함)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</p>	p.15
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.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</p> <p>[표]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<제1의 9 추가></p> <p>■ 종사자의 경우 ● 법 제35조의2제2항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</p>	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.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</p> <p>[표]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1의9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■ 종사자의 경우 ● 법 제35조의2제2항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	p.18~21

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. 공개모집</p> <p>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워크넷, 복지넷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희망이음 중 3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</p>	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. 공개모집</p> <p>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외에 지자체 홈페이지, 워크넷, 복지넷, 희망이음*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</p> <p>*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설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</p>	<p>p.39</p>
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라.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</p> <p>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, 제35조,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</p>	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라.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</p> <p>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지지체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, 제35조,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</p>	<p>p.42</p>
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마. 「근로기준법」 등 적용관련</p> <p>[표]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<제3조 추가></p>	<p>Ⅱ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마. 「근로기준법」 등 적용관련</p> <p>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. (후략)</p> </div>	<p>p.43</p>

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<표추가></p>	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[표]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</p>	<p>p.44</p>
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바. 기타 사항 <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, 12진정0944300 등 참조> 삭제, 채용절차법으로 대체(추가)></p>	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바. 기타 사항 [참고]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 제4조의3(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)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구직자 본인의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.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 3.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</p>	<p>p.45</p>
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⑤ 사회복지시설 휴자·재개·자진폐지 라. 지자체 조치사항 <신설></p>	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⑤ 사회복지시설 휴자·재개·자진폐지 라. 지자체 조치사항 ※ 법 38조에 따라,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보고, 보조금 정산, 입소자 퇴소보고,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</p>	<p>p.49</p>
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(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) 다. 행정처분의 기준(시행규칙 제26조의2 [별표 4]) 9. 시설에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5</p>	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(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) 다. 행정처분의 기준(시행규칙 제26조의2 [별표 4]) 9. 시설에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5호의 노</p>	<p>p.52</p>

<p>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(이하 "범죄"라 한다)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	<p>인학대관련범죄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(이하 "범죄"라 한다)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																	
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⑨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2022~2024 사회복지시설 평가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9 446 862 686"> <thead> <tr> <th>평가년도</th> <th>평가대상시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22</td> <td>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소규모 유형] 장애인단기거주시설</td> </tr> <tr> <td>2023</td> <td>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[소규모 유형] 아동·장애인·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</td> </tr> <tr> <td>2024</td> <td>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년도	평가대상시설	2022	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소규모 유형] 장애인단기거주시설	2023	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[소규모 유형] 아동·장애인·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	2024	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	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⑨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2023~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64 446 1859 686"> <thead> <tr> <th>평가년도</th> <th>평가대상시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23</td> <td>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[소규모] 아동·장애인·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</td> </tr> <tr> <td>2024</td> <td>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</td> </tr> <tr> <td>2025</td> <td>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소규모] 장애인단기거주시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년도	평가대상시설	2023	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[소규모] 아동·장애인·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	2024	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	2025	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소규모] 장애인단기거주시설	p.61
평가년도	평가대상시설																	
2022	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소규모 유형] 장애인단기거주시설																	
2023	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[소규모 유형] 아동·장애인·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																	
2024	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																	
평가년도	평가대상시설																	
2023	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[소규모] 아동·장애인·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																	
2024	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																	
2025	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소규모] 장애인단기거주시설																	
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⑨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시설평가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3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- 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 ● 평가대상기간 : 2020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 <p><내용 추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평가결과 및 공개 -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을 부여하고,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※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'결과없음'으로 표기 예정 -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시설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 예정 -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경우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hw.go.kr)에 공개<내용 추가> 	<p>II.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⑨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시설평가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4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- 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 ● 평가대상기간 : 2021년 1월 1일 ~2023년 12월 31일 - 2022년도에 현장평가를 실시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평가대상기간 2년(2022년 1월 1일~2023년 12월 31일) 적용 ※ 2년미만 휴업시설은 휴업기간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 등 운영주체 변경 시설은 3년 적용 ● 평가결과 및 공개 -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,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※ <삭제> - <삭제> -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hw.go.kr)에 공개하며, 공개 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영역과 평가거부시설 명단 공개 	p . 6 2 , 63																

<p><참고 추가></p>	<p>[참고] <u>사회복지시설 담당 관련 교육안내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과정 및 내용 안내</u> ● <u>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 과정 및 내용 안내</u> 	<p>p. 65, 66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</p> <p>⑩ 사회복지제도</p> <p>다.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원 직무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직무교육 과정(비합숙교육, 교육여비 지급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4 517 1023 979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사회복지과정</th> <th>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</th> <th>보건의료과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육대상</td> <td>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</td> <td>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무원</td> <td>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지무원</td> </tr> <tr> <td>활동유형</td> <td>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·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·정서·프로그램·생활지원</td> <td>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</td> <td>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·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</td> </tr> <tr> <td>주요 교과목</td> <td>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</td> <td>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, 민원응대 등 16개 과목</td> <td>보건의료서비스 이해,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 이해 등 15개 과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사회복지과정은 사회복지·노인·장애인·아동·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</p>	구 분	사회복지과정	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	보건의료과정	교육대상	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	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무원	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지무원	활동유형	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·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·정서·프로그램·생활지원	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	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·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	주요 교과목	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	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, 민원응대 등 16개 과목	보건의료서비스 이해,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 이해 등 15개 과목	<p>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</p> <p>⑩ 사회복지제도</p> <p>다.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원 직무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직무교육 과정(비합숙교육, 교육여비 지급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64 504 2007 973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사회복지과정</th> <th>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</th> <th>보건의료과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육대상</td> <td>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</td> <td>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무원</td> <td>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지무원</td> </tr> <tr> <td>활동유형</td> <td>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·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·정서·프로그램·생활지원</td> <td>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</td> <td>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·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</td> </tr> <tr> <td>주요 교과목</td> <td>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</td> <td>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, 민원응대 등 17개 과목</td> <td>보건의료서비스 이해,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 이해 등 16개 과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<삭제></p>	구 분	사회복지과정	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	보건의료과정	교육대상	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	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무원	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지무원	활동유형	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·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·정서·프로그램·생활지원	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	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·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	주요 교과목	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	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, 민원응대 등 17개 과목	보건의료서비스 이해,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 이해 등 16개 과목	<p>p.70</p>
구 분	사회복지과정	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	보건의료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대상	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	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무원	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지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동유형	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·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·정서·프로그램·생활지원	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	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·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 교과목	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	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, 민원응대 등 16개 과목	보건의료서비스 이해,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 이해 등 15개 과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사회복지과정	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	보건의료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대상	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	시·군·구청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지무원	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지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동유형	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·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·정서·프로그램·생활지원	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	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·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 교과목	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	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, 민원응대 등 17개 과목	보건의료서비스 이해,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 이해 등 16개 과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참고 추가></p>	<p>[참고] <u>사회복지무원 관련 교육 지원 안내(한국보건복지인재원)</u></p>	<p>p.74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Ⅲ.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</p> <p>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</p> <p>라. 용어의 정리</p> <p>※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<u>희망이음</u> 인사회계기능 개통(23년 중) 전까지 <u>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</u>을 사용</p>	<p>Ⅲ.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</p> <p>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</p> <p>라. 용어의 정리</p> <p>※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<u>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</u> 인사회계기능 개통(24년 중) 전까지 <u>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</u>을 사용</p>	<p>p. 86, 89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p>Ⅲ.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</p> <p>②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의 활용 다. 사용대상</p> <p>※ 다만,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,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,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희망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(시설정보부)으로 공문을 통해 신청 필요</p>	<p>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</p> <p>②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의 활용 다. 사용대상</p> <p>※ 다만,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,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,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희망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(시설정보부)으로 연장사유, 사용할 메뉴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최대 2회까지 각 30일 한도 내에서 연장(향후 시스템을 통한 신청 기능 개통 예정)</p>	p.91
<p>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</p> <p>[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]</p> 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)</p>	<p>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</p> <p>[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]</p> 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-6호)</p>	p.111
<p>IV.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</p> <p>① 보험가입여부 확인</p> <p>-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,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·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·안내</p> <p><법조문 추가></p>	<p>IV.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</p> <p>① 보험가입여부 확인</p> <p>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를 참조하되,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·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·안내</p> <p>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 제84조의2 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)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”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. 1. 사망의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 2. 부상의 경우: 3천만원 이상 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</p>	p.116

<p><추가></p>	<p>●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예정</p>	
<p>IV.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</p> <p>④ 안전관리 교육 훈련</p> <p><참고 추가></p>	<p>IV.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</p> <p>④ 안전관리 교육 훈련</p> <p>[참고]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</p> <p>● 교육내용 : 사회복지시설 보험제도, 전기가스안전관리, 시설물 안전점검 등</p> <p>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(www.sfrms.or.kr)에서 수강 가능(매년 8월경*)</p> <p>*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</p> <p>● 문의처 : ☎ 055-771-4920</p>	<p>p.122</p>
<p>V.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</p> <p>⑥ 후원금의 관리</p> <p>주의</p> <p>※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·부당 사용,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, 법인·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·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</p> <p>※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과 별개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</p> <p>※ 사회복지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‘지정기부금단체’에 해당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(관할세무서)에 보고하여야 함</p> <p><후략></p>	<p>V.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</p> <p>⑥ 후원금의 관리</p> <p>주의</p> <p>※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·부당 사용,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, 법인·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·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</p> <p>※ <삭제></p> <p>※ 사회복지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‘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’에 해당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(관할세무서)에 보고하여야 함</p> <p><후략></p>	<p>p.144, 145</p>

<참고 신설>

참고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질의 회신
(행안부 민간협력과-1292('23.11.17.)호)

● 질의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적극적 모금행위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해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, 모집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지켜야하는지 여부

● 답변사항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르면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·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단체 등이 아닌 경우, 적극적인 모집행위*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.

* 서신,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·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(「기부금품법」 제2조제2호)

VI. 부록

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

2. 경력인정 범위

가.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

구분	
1. 사회복지 시설경력	<신설>

VI. 부록

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

2. 경력인정 범위

가.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

구분	
1.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	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※ 나.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100% 경력환산은 '24.1.1.부터 적용

p.247

<p>VI 부록</p> <p>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</p> <p>2. 경력인정 범위</p> <p>가.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</p> <p><표></p> <p>너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·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</p> <p><신설></p>	<p>VI 부록</p> <p>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</p> <p>2. 경력인정 범위</p> <p>가.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</p> <p><표></p> <p>너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·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</p> <p>※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4.1.1.부터 적용(단,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'15.1.1.부터 적용, 기타 중앙부처는 '23.1.1.부터 적용)</p> <p>누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※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4.1.1.부터 적용</p>	<p>p.249, 251</p>
<p>VI. 부록</p> <p>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</p> <p>6. 호봉의 확정과 승급 방법<삭제></p>	<p>VI. 부록</p> <p>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</p> <p><삭제></p>	<p>p.255</p>